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5일, 고민정 의원 등 2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교육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고민정 의원)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강요할 수 있는 시위대의 주장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옥외집회 및 시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대한민국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허가제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집시법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집단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외의 집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금지를 두지 않고,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금지 시간·장소 해당 여부나 교통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금지 통고를 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법 제10조에 따라 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이는 현행 집시법상의 금지통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와 별개로 사전적으로 해당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기존 집시법과 유사한 방식(예: 집시법 규정의 준용)으로 규율하거나, 교육환경법 내에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고민정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김민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의원)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임. 해당 개정안은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조치임.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함에도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집회·시위는 대부분 일회적·일시적으로 발생함에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임. 동 법안은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임.

(고민정, 김영호, 김준혁, 박성준 의원)

술집, 도박장 등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한정하여 금지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임. 이는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학교장이 요청하는 것에 불과함. ‘혐오’ 표현 대신 ‘차별·모욕·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성을 확보하였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사회적 약자인 이주배경학생을 법률로 보호할 필요성이 큼.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아니한 포괄적인 입법임.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와 학습권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